

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4. 30.

발의자 : 김광수 · 이찬열 · 이동섭

최경환(평) · 장병완 · 정인화

김경진 · 박주민 · 김삼화

황주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민법」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, 「민법」이 개정(법률 제10429호, 2011. 3. 7. 공포, 2013. 7. 1. 시행)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.

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“무능력자의”를 “제한능력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무능력자가”를 “제한능력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무능력자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<u>무능력자의 행위능력</u>) <u>무</u> <u>능력자가</u> 우편환에 관하여 우 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 자가 한 것으로 본다.	제17조(<u>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</u>) <u>제한능력자가</u> ----- ----- -----.